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udiciary Control for the Japanese Colonial Rule

김 상 균**

Sang Gyun Kim

국문요약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법적 통제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초기 태형의 부활과 범죄즉결령은 당시의 위협적인 식민
무단통치가 사법적 통제모델의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는 전형적인
처벌수단이었다. 일제가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전통적 처벌의 수단이었던 태형의 부활과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
근대감옥의 도입과 운영, 사형선고와 집행의 시행과 확대 등을 통한
의병활동 등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민중을 구금하고 억압하려는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식민지 근대감옥을 활용한 구금제도는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처벌의 도입으로 인하여 ‘범법자’ 집단의 탄생과, 이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전근대성의 적극적인 활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식민지 국민으로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아만적이고 형식적인 근대 감옥의
도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성감옥 등 전국의 근대감옥은 일제에

<http://doi.org/10.56475/ygsr.2023.28.1.1>

논문투고일 : 2023.05.10. 논문심사일 : 2023.05.15. 게재확정일 : 2023.05.31.

* 본 논문은 2023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E-mail: sgkim@bu.ac.kr)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ce Studies of Baekseok University, Doctor of Laws

항거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여 구금하는데 활용되었다. 셋째,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은 물론 상당수의 항일운동가들이 사형당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항일독립운동가 즉 사상범(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일제의 사법적 처벌이 과도하게 남용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일제가 식민지배의 억압적인 통치수단으로 사형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즉결처분, 구금, 사형, 사법적 통제, 억제효과, 식민통치

— 목 차 —

I. 서 론	III. 일제의 사법적 통제
II.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	IV. 결 론

I. 서 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한국사회에는 형벌과 사회통제의 방식의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죄인에 대한 일회적 체벌과 유배 등의 전통사회의 처벌방식은 이 시기 이후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통제받는 자유형의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기존의 형벌제도를 근대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시간도 없이 일제에 의해 일본적 근대감옥 제도가 도입되었다.

1908년 갑오개혁 때 제정된 감옥규칙에서 식민지 조선을 억압하고

통치하고자 응보형주의, 엄벌주의적 성격의 규칙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었다. 근대감옥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중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강제적 규율을 부여하는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경우 처벌의 근대화 과정은 일방적인 이식의 과정인 만큼 그들에게는 근대감옥은 효과적인 식민지 통치의 확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었고, 경찰과 감옥기구 안에서 행해지는 자의적 처벌이 만연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식민지 초기 태형의 부활과 범죄즉결령은 당시의 위협적인 식민무단통치가 사법적 통제모델의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는 전형적인 처벌수단이었다. 결국 일제가 전통적인 사회의 처벌체계를 일방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일제의 선택적·악의적인 근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가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전통적 처벌의 수단이었던 태형의 부활과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 근대감옥의 도입과 운영을 통한 의병활동 등 식민지를 저항하는 민중을 구금하고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은 물론 상당수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사형 당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항일독립운동가 즉 사상범(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일제의 사법적 처벌이 과도하게 남용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일제가 식민지배의 억압적인 통치수단으로 사형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형제도, 감옥, 즉결처분 제도 등을 운영하였고 그 내용과 특징 및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가 합법성을 가장한 사법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식민지 통치의 전략으로 활용된 즉결처분, 구금, 사형선고와 집행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일본과 한국의 통계자료와 저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형사제재의 한 유형인 즉결처분과 구금, 사형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고 기간은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무단통치기에 한정하였다.

II.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

벤담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 즉, 범죄행동도 합리적 계산에 의한 인간 자유의지의 결과로 본다. 이처럼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에 의한 범죄행동은 사회에 의해 처벌되는데 이러한 처벌은 억제기능에 의해 정당화된다(Akers and Sellers, 2003). Andenaes(1974: 132-133)는 억제(deterrence)를 “두려움으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검거나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한다. 억제의 가능성은 처벌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 이의 전제조건은 어떤 개인이 억제될 수 있기 전에, 실제 처벌의 경험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대신에, Andenaes (1975: 145-147)는 처벌의 위협은 적절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협”이라는 아이디어와 초기 또는 미래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대한 관심은 그는 억제를 “일반예방”으로 칭하였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용하여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억제는 범죄 예방의 한 주요한 형태이며, 조직화된 형사사법기관이 생겨난 이후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었다.

1. 억제의 두 가지 유형

억제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유형, 즉 특별억제와 일반억제로 구별된다. 특별억제는 개별 범죄자들이 미래에 다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처벌의 경험은 처벌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할 것이다. 일반억제는 잠재적 범죄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은 다른 범죄자와 잠재적인 범위반자들에 아마도 본보기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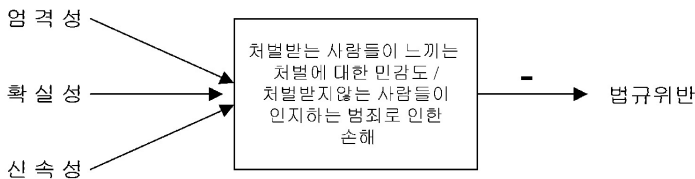
억제의 두 가지 유형 모두 합리적 범죄자를 가정한다. 어떤 억제효과도 범죄자가 사회의 행동규범을 위반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범죄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억제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합리성은 또한 잠재적 범죄자들이 쾌락주의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처벌은 개인에게 괴로움으로 생각될 수 있고, 범죄행동의 결과는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억제는 범죄로 부터의 이익을 이와 상응한 정도나 이 보다 많은 손해로 상쇄시키려는 것이다. 일반억제는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경험한 고통이 유사한 행동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잠재적인 고통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억제의 3요소

처벌의 억제효과는 세 가지 요소의 존재에 달려있다. 이것은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그리고 신속성이다. 엄격성(severity)은 처벌을 범죄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상쇄시킬 정도의 충분한 고통을 줄 정도로 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 아래에 깔린 기본가정은 개인은 범죄의 이익이 잠재적인 비용보다 크면 범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는 불법적 행동으로부터의 즐거움이 고통을 초과한다는 분석의 결과이다. 엄격성은 행위의 긍정적이고 즐거울 수 있는 결과를 제거하며, 그것을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고통으로 바꾸어놓으려고 한다. 고통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포인트는 처벌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그림 1> 억제이론의 인과구조

확실성(Certainty)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검거되고 처벌될 가능성을 다룬다. 고통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자를 가려내고, 검거하고, 유죄 판결을 하고, 그리고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엄격성의 수준은 만약 그 개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일반억제에서, 법집행의 부재는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형사사법기관이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기관의 의지와 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 신속성(Celerity)은 사회적 대응의 신속성을 말한다. 신속성의 가정은 처벌이 시간적으로 행동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행동

직후에 나오는 처벌과 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처벌로부터 지연된 고통을 범죄로부터의 초기의 즐거움과 상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3. 처벌의 억제효과

1) 엄격성의 억제효과

사형에 대한 횡단적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제도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살인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형의 억제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옹호자 중의 한 사람인 에르리히(Ehrlich, 1977)는 형벌과 낮은 살인범죄율과 강한 관계를 주장하였다. 에르리히는 사형제도가 있는 주(州)와 없는 주(州)를 비교하여, 한 사건의 사형이 20건 이상의 살인 범죄를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형이 억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금의 길이는 또한 살인 범죄율을 낮춘다고 지적했다(Ehrlich, 1977).¹⁾

아처 등(Archer et al., 1983)은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서 사형의 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이용하는 것은 한 국가에서 또 다른 국가에 이르는 대신 나타나는 억제효과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사실상의(de facto)” 사형제도 대신에, “법률상의(de jure)”, 또는 사형법의 존재여부를 검토하였다. 그와 동료(1983)들은 이 연구에서 억제효과를 거의 발견하지

1) 일반적으로 횡단적 연구에 대한 비판은 분석수준으로서 주를 이용하는 것이다. 첫째, 주들은 주 자체 내에서도 필수적으로 동질적이지는 않다. 둘째, 주들은 확실히 사형제도가 있고 없고 때문에,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는 않다. 게다가, 주의 관할구역경계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사형제도의 가능한 확산효과(diffusion effect)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 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웃주의 사형제도의 사용이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중은 법에 대해 모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 시행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사형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못하였다.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국가에서는 낮은 살인율과 관련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높은 살인율과도 관련이 있는 등 사형제도의 살인율의 억제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²⁾ 이 발견은 다양한 추적기간들에서 사실로 나타났다. 단순히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의 실제 적용이나 확실성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2) 확실성의 억제효과

몇몇 연구들은 처벌의 확실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의 확실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티틀과 로우(Tittle and Rowe, 1974)는 검거의 확실성(certainty of arrest)과 범죄율에 대한 그것의 효과를 검증한 바, 검거의 확실성(검거율)이 검거의 확률이 매우 낮을 때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확실성은 검거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기르켄과 고브(Geeken and Gove, 1977)는 재산범죄의 경우 보다 계획 하에 행해지기 때문에 체포해결율(arrest clearance rate)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재산범죄 보다 즉흥적인 대인범죄와 검거 간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포스트(Forst, 1977)는 또한 높은 유죄선고율(conviction rate)을 보이는 주(州)일수록 낮은 살인범죄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와 리스카(Yu and Liska, 1993)는 검거의 확실성이 인종에 관계없이 고유하고 강한 억제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프레이저와 노먼(Fraser and Norman, 1989)은 만성적

2) 이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율에 대한 다른 복잡한 영향들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충되는 결과는 국가들 간의 다른 차이 탓이며, 사형제도의 다양한 영향 탓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억제요인들을 배제하고 엄격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범죄자³⁾와 초범지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에 대한 억제효과를 비교한 바, 초범이 검거와 처벌에 대해 보다 두려움을 더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흥미롭게도, 두 청소년집단은 유사한 수준의 검거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Fraser and Norman, 1989).

3) 엄격성과 확실성의 상호작용효과

많은 연구들은 엄격성과 확실성의 분석을 조합했다. 초기 기브스(Gibbs, 1968)의 연구에서 살인율이 처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에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티틀(Tittle, 1969)은 FBI의 모든 지표범죄(Part I offence)에 대해 유사한 분석을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행한 후, 엄격성과 살인범죄 간에 부적 관계를 발견하였지만, 다른 범죄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지표범죄들은 단지 처벌의 확실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Tittle, 1969). 파셀(Passell, 1975)은 엄격성과 확실성 모두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는 州(주)의 법 및 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본 후, 유죄판결(확실성)과 구금형(엄격성)이 모든 州(주)의 살인범죄율에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샘슨(Sampson, 1986)은 확실성을 지역 검거율로, 그리고 엄격성(171개 미국 도시들의 구금의 위협)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하였는 바, 확실성과 엄격성은 강도범죄에 대한 억제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살인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하였다(Sampson, 1986).

3) 만성적 범죄자들은 4건 이상의 중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Ⅲ. 일제의 사법적 통제

1. 즉결처분과 사법적 통제

1) 즉결처분의 개요

일본은 한국을 합병한 이후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하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형법대전을 적용하는 등 법 적용면에서 차별을 하였다. 이후 동일한 법규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1912년 3월부터 조선형사령(제령 제11호)을 공포하고 형법대전을 명목상으로 폐지하였다. 그리고 1912년 같은 해 조선태형령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태형집행의 근거가 되는 형법대전 없이도 조선인에 한하여 태형을 그대로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식민지적 태형’이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래 조선을 비롯하여 동양의 전통사회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교화방법은 수치를 느끼도록 매질을 하여 ‘수치의 부과’를 노리는 것이었다.

일제는 신체형의 전통을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교묘히 활용하였다. 일본은 자국의 태형은 1882년에 완전히 폐지하고 대만, 관동주와 조선 등 식민지에만 존속시켜 활용하였다. 이처럼 태형은 정신신적 고통에 둔감한자에게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고통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⁴⁾ 일제하에 태형은 형식적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하루에 30대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형구의 재질 자체가 가죽으로 바뀌어 채찍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훨씬 혹독한 매질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혹한

4) 관헌의 기록에 의하면 때로 자유형을 기피하고 태형을 희망하는 자가 없지 않지만 태형의 전과가 있는 자는 그 고통을 경험하여 그 두려움으로 자유형을 희망하는 자가 많음을 볼 때 그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형벌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태형의 경우 실제로 집행자의 자의적인 감정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그 당시 태형이 정식재판에 의해서 부과되기 보다는 일본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던 실정이었다. 자의적인 처벌의 법적 근거는 1910년에 제정된 범죄즉결령(제령 제10호)에서 기록되어 있다.⁵⁾ 대부분의 조문들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찰범처벌령(1908년, 내무성령 제16호)에 의거한 것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일제가 깊숙이 개입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제하여 독립투사 등의 항일운동에 손발을 묶고자하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다. 이는 부랑자나 빈민층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일제에 항거하는 대중의 조직화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법적 통제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2) 범죄즉결사건 처벌인원 비교분석

범죄즉결령의 제19,20,29,32조의 항목들은 식민지 조선에만 고유한 규정으로 항일정치활동을 규제하고 관련자를 수색하여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는 정식재판에 의한 처벌인원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대신하여 태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형이 즉시 처벌하고 방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구금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태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태형의 시행결과, 수감자들에게 주는 ‘고통의 신속성, 강력한 응징효과의 엄격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식민지에서 적합한 처벌로

5) 범죄즉결령 제1조에 경찰서장 도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류, 3월 이하의 징역 등이 명기되어있다.

활용되었다, 더구나 동료수감자나 일반 대중에게 주는 위화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복종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는 등 조선 식민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을 활용하였다.

<표 1> 범죄즉결사건 처벌 인원 비교

(단위: 명)

연도	처벌 총인원	자유형	재산형	체형	처벌총인원에 대한 백분비 (단위: %)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태형	자유형	재산형	태형
1910	3,144	39	127	2,978	1.2	4.0	94.7
1911	21,388	995	4,728	15,065	4.7	22.1	70.4
1912	36,159	2,274	15,451	18,434	6.3	42.7	51.0
1913	45,848	2,569	23,320	19,959	5.6	50.9	43.5
1914	48,763	3,280	22,464	23,019	6.7	46.1	47.2
1915	59,436	4,452	28,187	26,797	7.5	47.4	45.1
1916	81,137	4,951	36,960	39,226	6.1	45.6	48.3
1917	92,813	4,294	43,651	44,868	4.6	47.0	48.3
1918	94,546	4,528	51,335	38,683	4.8	54.3	40.9
1919	71,984	4,809	32,242	34,933	6.7	44.8	48.5

참고 :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0-1911, 1917-1919)에서 작성 단 수치가 지나치게 적게 나온 1912년의 경우는 사법부감옥과 「答刑に就て」, 「朝鮮叢報」

위의 <표 1>에서 즉결처벌의 인원수는 거의 매년 만 명에 가까운 추세로 증가하였으며, 1917년 4만 4천여 명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전체 처벌유형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래 범죄즉결령은 가벼운 범죄를 약식으로 정식재판없이 처벌하는 법령이었다. 실제 같은 시기에 일본의 경우 전체 의 80%를 넘는 인원이 과료형의 선고 받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태형 자체만으로도 재산형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징역과

금고를 비롯한 자유형의 선고 건수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 태형의 건수는 관헌의 공식통계에 기록된 건수만 잡히는 것이지만 기록에 누락된 수를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태형의 처벌비율도 1912년 (51%)을 전후하여 확실히 감소하였지만 전체 처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1916년 이후로는 자유형을 추월하는 수치(재산형 45.6% < 48.3%)를 기록하였다.

3) 정식재판에서의 처벌인원 비교분석

아래 <표 2>의 정식재판에서의 각 형별 처벌 인원을 보더라도 1911년 기준 2,528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1916년에는 13,317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독립만세가 있었던 바로 1년 전인 1918년에는 태형의 처벌인원이 18,019명으로 증가하는 등 일제의 조선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으로 태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표 2> 재판사건에서의 각 형별 처벌 인원

(단위: 명)

연도	수형자 총 인원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태형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계	벌금	과료	계	
1911	12,590	90	8,904	67	22	8,993	340	114	484	2,528
1912	15,744	79	9,554	19	41	9,614	844	309	1,153	4,316
1913	20,124	58	11,020	39	27	11,086	1,676	444	2,120	6,278
1914	21,334	53	11,539	111	39	11,689	1,423	381	1,804	7,246
1915	24,369	74	12,329	47	43	12,419	1,677	461	2,138	8,999
1916	30,009	54	12,942	51	31	13,024	2,114	641	2,755	13,317
1917	35,957	51	13,725	22	40	13,787	1,521	912	3,433	17,761
1918	35,692	34	12,773	23	31	12,827	2,942	809	3,751	18,019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1011-1918)에서 구성, 이 밖에 당시 무죄, 免訴, 기타로 구분된 인원은 생략하였음.

따라서 일제는 태형을 실질적으로 식민지 초기에 대중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위협적 통치정책으로서 널리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태형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일본 내의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는 일본의 경우 행형의 개별주의와 규율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구금을 지향하는 독일식 감옥관리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기였다. 따라서 태형의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차원에서 반대목소리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의 한 유형으로 태형은 식민지 대중을 위협하고 강제적으로 길들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예컨대 대만의 경우 저항의 정도가 낮고 배금주의성향이 강해 재산형의 부과가 적절하였지만 조선의 경우는 저항의 정도가 높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처벌방법이 요구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구금과 사법적 통제

1) 일제의 개입 하에 「감옥규칙」의 내용분석

갑오개혁 이후 전옥서 외의 다른 감옥시설은 폐지되거나 전옥서에 병합되었고⁶⁾, 전옥서는 내무아문 관하 경무청에 소속되었다. 1894년 11월 25일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감옥 관련 법규인 「감옥규칙」이 작성되었다. 「감옥규칙」은 총 21조로 구성되어있으며, 미결감과 기결감의 구분, 감옥의 행정상 관할, 감옥내 직무분장, 감옥내 죄수 관리 규정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다.⁷⁾

6) 조선의 전통적인 감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옥서(형조 관할)와 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금부옥(의금부 관할)이 함께 존재했다. 이외에도 병조, 사간원, 비변사, 포도청, 내수사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감옥이 존재했다. 그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자의로 구류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7) 1894년 작성된 「감옥규칙」은 내각 기록과 에서 편찬한 법령집인 『법규류편(法規類編)』

갑오개혁 이전인 1889년 일본에서는 개정된 「감옥칙」을 사용하고 있었던 바, 1894년 작성된 조선 「감옥규칙」의 전반적인 체제와 내용은 1889년 개정된 일본의 「감옥칙」과 매우 유사하였다. 이 중 15개 조항은 모두 「감옥칙」과 유사한 체제 및 내용을 갖고 있다. 「감옥칙」에 없는 6개 조항도 1889년 7월 16일 발표된 「감옥칙시행세칙」의 내용과 동일하여, 「감옥규칙」은 사법권의 일원화 및 사형(私刑) 금지, 연좌제 폐지, 고문 폐지, 태·장·도·유형을 징역으로 대체, 형구(刑具) 제한, 능지(凌遲)·처참(處斬) 등 혹형 폐지 등 형벌제도에 관한 일련의 개혁안이 발표된 시기에 제정되었다. 이는 외형적으로 지배권력으로 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형법체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감옥규칙」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선제적으로 장악하여 자국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 했던 일본의 조선 침략과정의 일환인 동시에 조선정부 내 개혁론자들이 주장해온 근대적 감옥개혁론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2) 식민지 근대감옥운영 실태분석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감은 경성감옥을 비롯하여 조선 8도에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본감의 관할 내 주요 도시에 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에만 수록되어있다. 실록을 포함한 편년사서나 그 외 어떤 정부 문건에도 이 규칙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의안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도 없었다. 그렇기에 그 작성주체 및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표 3> 전국 감옥의 명칭과 소재지

명 칭		소재지 등 내용
본 감	경성감옥	금계동(1908. 10. 신축). 1909년에 수용인원 증가로 서대문 대평동의 조선포병대 막사를 개조하여 수용
	평양감옥	평양이사청감옥이 평양감옥으로 종래의 평양감옥은 대흥동파출소로 개칭(1909).
	대구감옥	대구시 삼덕동(1921. 신축이전)
	공주감옥	1908. 7. 개칭. 공주군 남부면 하봉리 위치.
	해주감옥	1908. 7. 해주경찰서감옥을 인수 감옥 사무 개시. 초대전옥
	광주감옥	광주시 동명동(1912. 5. 신축이전). 개칭 당시 감방수는 11개, 평수는 모두 28평 5흡, 재감자는 130명. 초대전옥 古垣宗次郎
	진주감옥	개칭 당시는 본감이었으나, 1909년 관제 개편으로 부산감옥 진주분감으로 변경(부산분감이 본감으로 승격).
	함흥감옥	1908. 함남경찰서부속 감옥을 인수. 재감자 60명.
분 감	경성감옥인천분감	1909년 설치되었다가 1923년에 폐지. 인천구호원으로 사용.
	진주감옥부산분감	1909년 부산시 대청동에 설치되었다가 본감으로 승격.
	광주감옥전주분감	전주감영의 감옥을 인계받아 사용하다가 1910년 11월 전주시 진북동으로 신축이전.
	평양감옥의주분감	1909년 2월에 민간가옥을 개조하여 설치되었다가 10월에 평양감옥신의주분감이 신설되면서 신의주분감 의주파출소로 변경.
	경성감옥춘천분감	1909년 9월에 춘천읍 위동리의 재판소 부지로 신축 이전.
	함흥감옥원산분감	1909년 원산리 명석동에 개칭.
	함흥감옥경성분감	1909년 10월에 청진분감이 신설되면서 청진분감 경성파출소로 변경.
	공주감옥청주분감	개칭당시 온돌방 5개에 8평 8흡이었다.

자료: 법무부, 『한국교정사』(법무부, 1987)에서 참고하여 재작성함.

1907년에는 감옥관계가 칙령 제52호로 제정되어 일본인 형무관이 채용되고 일본식 행형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감옥은 경무청에서 분리, 독립되었고 조직과 법령도 대폭 개편되었으며, 1908년에는 전국 8개 감옥의 명칭과 위치가 확정되어 7월 16일부터 감옥사무가 시작되었다.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옥은 대체로 이사청 산하 감옥과 지방 관아에 소속되어 있던 지방 감옥을 통합하여 그 위치와 명칭을

다시 정한 것이다. 한성부의 경무청 감옥서가 경성감옥서로 변경되었다가 서대문의 새 감옥으로 신축 이전하였고 기존의 지방 감옥들은 대체로 분감(分監)으로 재편되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지방 감옥의 건물들은 대개 온돌 감방 2~5개 정도가 있는 비교적 소규모였기 때문에 1908년 전국에 8개소의 감옥을 설치했을 때 비교적 근대적 감옥 시설을 갖춘 감옥의 면모를 보인 곳은 경성감옥 정도이었다.

<표 4> 1908년 기준 감옥별 수감인원

(단위: 명)

감 옥 별	계	기 결	미 결
경성감옥	835	514	321
공주감옥	246	172	74
함흥감옥	80	41	39
평양감옥	178	132	46
해주감옥	133	97	36
대구감옥	252	161	91
전주감옥	132	97	35
광주감옥	163	60	103
합 계	2,019	1,274	745

자료: 법무부, 『한국교정사』, 280쪽, 『朝鮮の行刑制度』 20-21쪽, 『朝鮮の行刑制度』,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 작성.

위의 <표 4> 1908년 기준 감옥별 수감인원에서 보면 1908년 당시 8개 본감을 기준으로 수감인원은 전체 2019명이었고, 이중 경성감옥이 8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감옥 252명, 공주감옥 246명, 평양감옥 178명, 광주감옥은 163명, 해주감옥 133명, 전주감옥 132명이었고, 함흥감옥은 80명으로 수감인원이 가장 적었다.

3) 수용인원의 증감 실태분석

다음 <표 5>의 연도별 수감인원 증감 추이에서 보듯이 기존에 수백 명 수준에 불과했던 전옥서의 수용 규모를 상기해 볼 때, 식민지화

이후의 수감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1908년의 2019명에서 1919년 3.1 독립운동까지 수감자 증감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 연도별 수감인원 증감 추이

연도	1908	1909	1910	1912	1914	1916	1918	1919
수감 자수	2,019	6,026	7,021	9,581	9,474	10,869	11,609	15,161

자료: 법무부, 『한국교정사』, 1987년에서 참고하여 재작성함.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 약 200~300명에 불과하던 수형자는 1908년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다음해인 1909년은 1908년 기준 약 3배 증가한 6,026명으로 급증하였다. 1910년 7,021명, 1912년 9,581명이었으며, 1916년에는 최초로 수감인원이 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독립운동이 극에 달하였던 1919년에는 무려 15,161명으로 수감인원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원인은 일제의 강점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의 고조와 이에 대한 대대적 탄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1910년 사법권 이양 이후로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에 처해지는 인원이 증가하는 등 재판권을 활용한 일제의 사법적 탄압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⁸⁾

3. 사형과 사법적 통제

1) 사형선고 실태분석

일본인과 조선인은 재판 절차가 서로 달랐는데, 조선인의 형사재판은

8)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911년 자유형은 8,993명, 1912년에는 9,614명, 1913년 11,086명, 1916년 13,024명, 1918년 12,827 등 재판사건에서 자유형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 수감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한제국의 『형법대전』, <민형소송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조선인 판사·검사는 피고인이 조선인인 사건만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3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대폭 개정하여 ‘재판소’를 ‘법원’으로 고치고 4급3심제를 폐지하여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급3심제로 개편하는 등 식민지적 사법제도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조선인과 조선 거주 일본인 모두 일본의 현행 형사 실체법과 형사 절차법에 따라 수사, 재판, 처벌되었다. 단 <조선형사령>에서 보듯이 일정기간 동안 식민지 통치를 위한 특례조항이 유지되었다.

<표 6> 연도별 사형선고 인원수(1911~1919년)

(단위: 명)

연도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소계
1심	90	81	59	54	74	54	51	35	49	547
2심	53	70	55	48	57	51	41	36	23	434
3심	79	69	55	53	51	56	41	44	13	461

출처: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1~1919년판).

위의 <표 6>은 『총독부통계연보』와 『조선사법일람』을 비교, 대조하여 심급별 사형선고 인원수를 정리한 것이다. 심급별 사형선고 중 재판소의 과형(科刑)의 추세를 알 수 있는 것은 1심 재판소의 사형선고이다.⁹⁾ 보통 판결확정과 사형집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형선고의 경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소의 사형선고 인원수가 중요하다. 1심 사형선고의 경우 1911년에 90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사형선고가 이른바

9) 전병무(2021), 『일제강점기 사형제도의 운영과 실태』, 『역사연구』, 제40호, 158쪽.

무단통치기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1918년 1심 사형 선고건수가 35건에서 독립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1919년에는 49건으로 급증한 것은 독립투사에 대한 사형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3·1운동을 전후하여 의병운동 등 저항적 사회분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심 사형선고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통치와 억압을 위해 강력한 사형제도가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사형집행 실태분석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전체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인원수를 알려주는 자료는 『총독부통계연보』, 『총독부관보』, 『조선사법일람』 등이 대표적이다. 아래 표는 자료를 근거로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사형집행 인원을 연도별로 분류한 통계이다.

<표 7> 전체 사형집행 인원수(1910~1919)

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계
집행 인원수	132	94	73	54	54	49	53	39	47	11	606

출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사법일람』.

<표 7>은 일제강점기 특히 무단통치기에 사형을 당한 인원수를 년도 별로 기록된 자료이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점기인 무단통치기에는 총 606명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년도별로 보면, 1910년 132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1911년 94명, 1912년 73명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19년에는 1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일제의 조선식민지 통치기인 무단통치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단통치기인 1910~1919년은 총 606명이 사형집행을 당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당한 전체 사형집행 인원수의 절반 이상인 약 51%를 차지할 정도로 사형집행이 집중적으로 많았던 시기이다.

사형집행 수 평균도 연평균 60.6명, 월평균 5.05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¹⁰⁾ 여기에는 상당수의 의병에 대한 사형집행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1919년도의 사형집행 인원수가 11명으로 가장 적었다는 점인데 3·1운동이 폭증하자 일제의 치안 당국은 33인의 민족대표를 비롯하여 폭동의 양상을 보인 3·1운동 사건에 대해 사형이 가능한 일본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억압한 것으로 물론이고 중일전쟁 등 전시체제로 속박하면서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 통치의 한 수단으로 사형집행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과 일본의 사형집행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사형의 식민 통치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아래 <표 8>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형집행 인원수가 1,192명이었는데, 동일 시기에 일본 국내의 사형집행 인원수와 비교를 통해 사형집행의 정치적 악용과 차별, 식민지 통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조선과 일본의 사형집행 인원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10)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과 관련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3·1운동의 촉발에 당황한 일제가 사법절차를 통한 합법적 수단을 대신하여 불법적인 학살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표 8> 조선과 일본의 사형집행 인원수(1910~1919년)

(단위: 명)

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계
조선	132	94	73	54	54	49	53	39	47	11	606
일본	39	40	24	60	5	94	94	63	56	56	532
비고	△97	△54	△49	▽6	△49	▽45	▽41	▽24	▽9	▽45	▲74

출처: 『사형폐지론』 단도 스데미즈 지음, 김희진 옮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349쪽.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총인구수와 조선의 총인구수를 비교하면 약 2~3배 정도 일본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구당 사형 비율을 보면, 조선이 일본 국내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¹¹⁾ 이처럼 조선에서 강력한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일제는 미개하고 낙후된 조선사회와 조선의 민족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범죄 현상은 조선사회의 봉건적 잔재, 개인의 욕망과 일탈,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인한 조선 민중의 삶의 피폐,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등 복합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의 <표 8> 무단통치기인 1910~1919년간 조선과 일본의 사형집행 인원수를 보면 일본국내의 사형집행인원수는 532명인데 비해

11) 에컨대 1912년 일본 총인구는 약 5천만 명이고, 조선은 약 1천 4백만 명이었는데 사형수는 일본 24명, 조선 73명이었다. 1936년에는 일본 총인구 약 6천 9백만 명, 조선 약 2천 1만 명) 대비 일본의 사형수는 14명, 조선의 사형수 33명이었다.

12)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것이 이른바 ‘본부살해(本夫殺害)’ 즉 조선 여성의 남편 살해이다. 조선총독부 사법부장관이었던 고쿠부 산가이(國分三亥)는 1911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인 여성 범죄자 318명 중 남편살해 범죄수는 총 182건에 이른다고 하면서, ‘일본에는 없는 조선 특유의 범죄’라고 하였다.⁶¹⁾ 그 이유는 조혼 등 조선 가족제도의 결함과 그것이 초래한 폐해 및 조선 부인의 성질 등 조선의 야만성과 미개성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하였다.

조선내 사형집행 인원수는 총 606명으로 훨씬 많은 수의 사형집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사형집행 인원수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죄명별로 보면 강도살인 238명(49%), 살인 136명(28%), 방화 58명(12%) 등의 순이었다. 강도살인과 방화를 합치면 61%로 이들의 상당수는 의병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의병들에게 적용된 법률이 강도죄이었기 때문이다.¹³⁾

일제가 조선에서 『형법대전』상 사형의 범죄유형을 1917년까지 존치시킨 이유도 의병활동을 하다 검거된 자를 사형의 법적 근거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독립투사 등 일제에 항거하는 대중에 대한 사형집행은 민족해방을 희망하는 조선 민중에 대한 “처벌적 위화효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사형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초기인 1910년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법적 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10년대 한국사회에는 형벌과 사회통제의 방식의 현저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범죄자에 대한 일회적 체벌과 유배 등의 전통사회의 처벌방식이 이 시기 이후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제인 감옥의 운영을 통한 자유형의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기존의 형벌제도를 근대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13) 홍영기(2006), 「蔡應彦 의병장의 생애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6호, 23-24쪽.

시간도 없이 일제에 의해 각종 법령체계의 도입과 근대적 감옥 제도가 도입되었다.

1908년 갑오개혁으로 제정된 감옥규칙에서 식민지 조선을 억압하고 통치하고자 응보형주의, 엄벌주의적 성격의 규칙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었다. 근대감옥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중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강제적 규율을 부여하는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경우 처벌의 근대화 과정은 일방적인 이식의 과정인 만큼 그들에게는 형사처벌과 구금, 사형 등은 효과적인 식민지 통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있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법적 통제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초기 태형의 부활과 범죄즉결령은 당시의 위협적인 식민무단통치가 사법적 통제모델의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는 전형적인 처벌수단이었다. 결국 일제가 전통적인 사회의 처벌체계를 일방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일제의 선택적·악의적인 근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가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전통적 처벌의 수단이었던 태형의 부활과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 근대감옥의 도입과 운영, 사형선고와 집행의 적극적인 시행과 확대 등을 통한 의병활동 등 식민지를 저항하는 민중을 구금하고 억압하려는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식민지 근대 감옥제도는 결국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처벌의 도입으로 인하여 ‘범법자’ 집단의 탄생과, 이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전근대성의 적극적인 활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식민지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야만적이고 형식적인 근대화 과정의 도입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08년 10월 21일에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뒤 일제에 항거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여 구금하는데 활용되었다. 그 후 1923년 5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까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되거나 옥사 당한 악명 높은 역사의 현장이었다.

셋째,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은 물론 상당수의 항일운동가들이 사형 당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항일독립운동가 즉 사상범(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일제의 사법적 처벌이 과도하게 남용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일제가 식민지배의 억압적인 통치수단으로 사형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법적 통제의 실상을 검증하는 목적을 거두었으나, 관련 연구논문의 미흡과 제한된 통계자료 등으로 인하여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 검증 등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사형선고와 집행, 감옥의 구금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삼웅(2000),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출판사.
- 김상균(2023),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 김성우(2016),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9.
- 김항기(2020), 「일제강점초기(1910~1915) 총독부재판소의 의병판결과 그 성격」, 수선사학회, 『사림』, 72.
- 남기정 율김(1978), 『일제의 한국 사법부 침략 실화』, 육법사.
- 團藤重光(2001), 刑廢止論, 김희진 율김, 『死刑廢止論』,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 도면희(2014),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학사.
- 鈴木敬夫(1989),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 문준영(1999),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20.
- 박경목(2015), 「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연구」, 충남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 _____(2016),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징」,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78.
- _____(2019), 『식민지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도서출판 일빛.
- 사사가와 노리카쓰(2019), 3·1독립운동 관계 판결에 의거하여-내란죄를 판결의 점검-, 『3·1독립만세운동과 식민지배체제』, 지식산업사.
- 이영록(2002), 「조선에 있어서 치안유지법 체제의 식민지적 성격」,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26.

- 이덕인(2013),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5(2).
- 이종만(1999), 「식민지시기 형사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55.
- _____(1999),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_____(1999),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22(2).
- 장신(2007),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사법 대응」,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18.
- 전병무(2021), 「일제강점기 사형제도의 운영과 실태: 사형통계자료와 사형집행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40.
-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형과(1938), 『朝鮮の行刑制度』.
-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사과(1929), 『昭和4年 死刑關係書類』.
- 조선총독부 법무국(1936), 『朝鮮の司法制度』.
- 조선총독부(1910~1919), 『조선총독부관보』.
- 조선총독부(1910~1919), 『조선총독부통계연보』.
- 村野薫 編(1990), 『日本の死刑』, 柘植書房.
- 한국교정사편찬위원회(1987), 「한국교정사」, 법무부.

A Study on the Judiciary Control for the Japanese Colonial Rule

Sang Gyun Kim^{*}

Abstract

The mechanism of judicial control us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by the Japanese Empire, which was confirmed through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revival of flogging and the immediate resolution of crimes in the early days of colonialism were typical means of punishment in which the threatening colonial rule of the time was reflected in the realm of the judicial control model. Under the pretext of introducing a modern judicial system under the guise of introducing a modern judicial system, Japanese colonial rule was revived as a traditional means of punishment, active use of it,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modern prisons, and active enforcement and expansion of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t was us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to detain and oppress the people who resisted.

Second, the detention system using colonial modern prisons is characterized by the birth of a group of 'criminals' due to the introduction of modern punishment in colonial Joseon in the 1910s, and the active use of pre-modernity in controlling them. This well shows the introduction of the barbaric and formal modernization process that Korea had to undergo as a colony. After opening as Gyeongseong Prison on October 21, 1908, it was used to arrest and detain numerous patriots who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Thir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anti-Japanese activists as well as the people of Joseon were execu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particular, the death penalty for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that is, ideological criminals (political criminals), is sufficient to raise suspicions that the judicial punishment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ce Studies of Baekseok University, Doctor of Laws
(E-mail: sgkim@bu.ac.kr)

of the Japanese Empire was excessively abused.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ath penalty was used as a means of oppressive rule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Keyword: Summary Conviction, Detention, Death Penalty, Judiciary Control, Deterrence Effect, Colonial Rule